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 2026. 10. 2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11. 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제한 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3 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하는 ETF 가 아닌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상장 이후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및 매도호가 공급을 통하여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나, 거래량 부족, 장중 괴리율 확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작성기준일 : 2026. 10. 27.)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EF973)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액티브상장지수펀드투자위험, 추적오차발생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액티브ETF)로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펀드의 BM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래의 전략을 수행합니다.

① 비교지수 편입종목 내 비중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창출
②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종목의 선제적 편입
③ 우선주 활용한 초과수익 창출

한편,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의 1년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이상(현행 규정상 0.7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투자신탁	없음	0.785	0.050	-	0.814	89	181	277	481	1,068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5.01.01 ~25.12.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5.12.31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	24.11.1.	75.44	-	-	-	57.47
비교지수		89.43	-	-	-	67.53
수익률 변동성		18.56	-	-	-	18.90

(주 1) 비교지수 : 코리아밸류업지수 x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해당, 펀드의 운용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9.30. 기준/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태하	1981 년	책임운용역 (이사)	9	2,962	80.58	56.79	86.19	60.35	15년 8개월
심규민	1992 년	부책임운용역 (과장)	6	469	102.32	-			3년 10개월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본부 ESG 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ETF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액티브 ETF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기초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ETF로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ETF가 아닌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패시브ETF보다 상대적으로 추적오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에 편입되어 있거나 비교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업가치 관련 질적지표 등을 통해 선별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개념 유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평가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3 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 및 잔여 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 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상장지수펀드 역시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 역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일반적인 패시브 상장지수펀드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적극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매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과세대상**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를 추적 목적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6. 11. 3.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7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주식)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 라고 함)(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특정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20,000 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상장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 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 요건

상장요건	상세내용
규모요건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 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의 수가 10 만좌 이상일 것
유동성 요건	지정참가회사가 1 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 사 이상일 것
자산구성방법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② 증권종목 이외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③ 위의 ①또는 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또는 ② 이외에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존속기한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 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폐지요건	상세내용
추적오차율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다만, 액티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가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유동성공급회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 조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유동성공급체결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 조제 1 항제 2 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해지사유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주 1)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들의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수익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7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내용
2024.10.30	-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
2024.11.01	- 투자신탁 최초 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성수동 1 가) (☏ 02-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6. 9. 30. 기준)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경력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태하	1981년	책임운용역(이사)	15 년 8 개월	**학력** 서울대 경영학 학사 **경력** 17.08~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ESG팀 10.08~17.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 Equity Investment 07.01~10.07 대우증권(現. 미래에셋증권) 기업분석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심규민	1992년	부책임 운용역 (과장)	3 년 10 개월	**학력**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 및 소프트웨어융합공학 학사 **경력** 25.04~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ESG팀 22.03~25.03 더제이자산운용 자산운용1팀 19.11~22.02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8.03~18.09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본부 ESG 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이며, 부책임운용역은 책임운용역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 9. 30. 현재, 단위:개,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수탁고)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이태하	9	2,962	3	1,388	80.58	56.79	86.19	60.35
심규민	6	469	-	-	102.32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책임운용역	이태하	2024.11.01. ~ 현재	-
부책임운용역	심규민	2026.02.06.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국내주식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 달성을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6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 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집합투자 증권등	40%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주식및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3)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 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동일)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4)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음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5)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 4)-라, 5)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주식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3 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액티브 ETF)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③ 펀드의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래의 세가지 투자전략을 수행합니다.
- 지수편입 종목 내 비중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창출: 트러스톤의 펀더멘탈 리서치를 기반으로 고평가 종목, 펀더멘탈 하강 종목의 비중축소 및 편출, 저평가 종목 및 펀더멘탈 개선 종목의 비중확대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종목의 선제적 편입 :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으며, 확대의지가 있어 향후 ROE 개선, PBR 개선이 예상되거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선제적 편입
- 우선주 활용한 초과수익 창출: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우선주 중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의지가 있는 종목을 통해 추가적 주주환원 및 자본이익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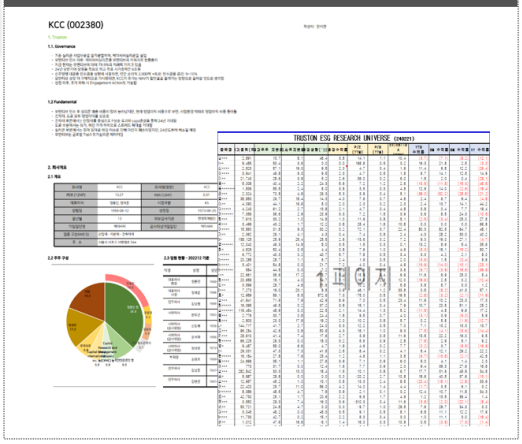
④ 운용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운용팀의 정성적인 판단에 따른 종목이 포함될 수 있음

[펀더멘탈 리서치와 지배구조 리서치를 기반한 지수 편입종목 내 비중조절]

- 펀더멘탈 리서치 기반 지수 편입 종목 내 고평가 종목, 펀더멘탈 하강 종목의 비중축소, 저평가 종목 및 펀더멘탈 개선 종목의 비중확대
- 지배구조 리서치 및 C-Level 미팅 등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 예상되는 종목들을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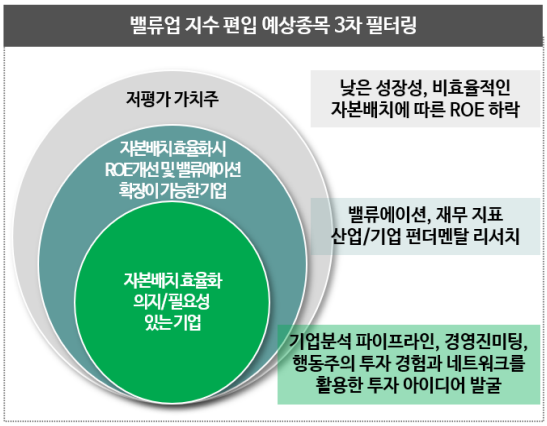
펀더멘탈 리서치	지배구조 리서치	C-Level 미팅
▪ 자산배분, 퀀트, 채권, 섹터 애널리스트 등 25명의 리서치 인력 ▪ 섹터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활동으로 광범위한 Coverage 및 Valuation Data 구축 ▪ 연간 1000회 이상의 기업탐방 바탕으로한 바텀업 리서치	▪ ESG본부 리서치 인력이 별도의 지배구조 리서치 진행 ▪ 저평가 여부, 주주가치 개선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 여부 판단 ▪ 주주행동 필요성 및 가능성 여부 판단 ▪ 50여개 이상의 인덱스 분석 파이프라인 보유 (확대 중)	▪ 경영진 미팅을 통해 주주가치 개선 가능성 및 경영진 의도 파악 ▪ 주주가치 개선을 위한 제안 등

리서치 예시 및 종목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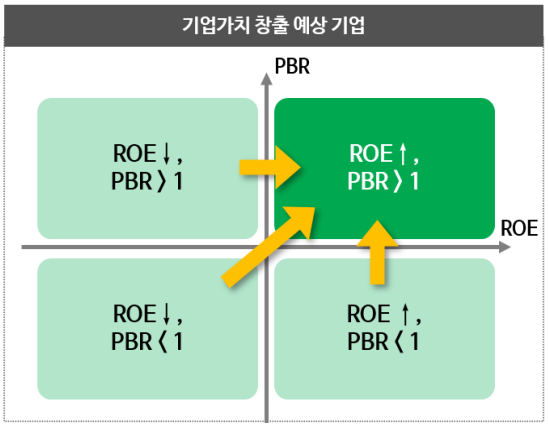


[3차 필터링 구조를 바탕으로 밸류업지수 편입 예상종목의 선제적 편입]

-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종목의 예상은 3차 필터링 구조의 선별 체계로 도출
-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거나 확대의지가 있어 향후 ROE 혹은 PBR이 개선되거나 향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
- 정량적 스크리닝 외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종목발굴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종 초과수익 포트폴리오 도출



자료: 트러스톤자산운용



자료: 트러스톤자산운용

[우선주를 활용한 초과수익 창출]

-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우선주 중 기업 주주환원 확대 의지가 있는 종목들을 발굴
-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주주환원수익률이 높고, 회사의 입장에서 보통주보다 자본비용이 높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우선주를 선제적으로 매입,소각 시 보통주 주주가치 상승
- 앞으로 우선주의 높은 자본비용을 고려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

⑤ 한편,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의 1년 상관계수를 일정수준 이상(현행 규정상 0.7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⑥ 펀드 운용에서 위험은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로 정의하고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 없는 주가의 등락을 초과수익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속적인 기업탐방, 세미나, 회의 등 현장 중심의 리서치 활동으로 기업의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를 면밀히 감지하며 운용할 예정입니다.

[운용 프로세스]

Macro 분석 및 Quant 전략 분석	업종 및 기업 분석	Truston Investment Universe	Truston ESG Universe	Truston Model Portfolio	Actual Portfolio
▪ 퀀트분석, 매크로 분석, 기업방문, 증권사 의견, ESG관련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투자 아이디어 개발 ▪ 글로벌 경제동향, 글로벌 이슈분석, 각국 주식시장 동향 등, 주요국 경제 및 주식시장전망, 종목 Screening	▪ 기업분석 후 실적추정, 가치평가. 가치평가는 Sum Of The Parts방법 등 다양한 방법 사용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분리, 가치평가)을 원칙으로 하고 섹터별로 적합한 밸류에이션 병행 ▪ 섹터 內 아이디어 제안은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가 주로 함 ▪ 장기 이익 추정 ▪ ESG check list / scoring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ESG 변화 체크	▪ 100여 개의 대형핵심 종목과 200여 개의 중소형 핵심종목으로 구성 ▪ 담당애널리스트가 기업의 부도위험, 성장성, 투자가치를 점검한 후 절차를 거쳐 편입 혹은 편출 제안	▪ 자문기관의 ESG평가와 트러스톤 ESG 평가를 반영 ▪ 트러스톤 유니버스 종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 ▪ Leader(자문기관 ESG 등급 B 등급 이상, ESG 의 기회요인이 잠재리스크보다 큰 기업) ▪ Momentum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으로 ESG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 Laggard (외부충격 없이는 ESG 개선 어려운 종목) 으로 분류	▪ CIO, 리서치 헤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섹터애널리스트와 토론 ▪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 등 결론 도출 및 MP 작성	▪ KOSPI BM이 아닌 펀드는 MP복제 의무가 없으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MP의 방향성을 참고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 액티브ETF의 경우 비교지수와의 1년 상관계수를 0.7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2) 위험관리 전략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 ETF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ETF로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ETF 거래 위험: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신탁으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의 실시간 기준가를 중심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호가가 존재하여 거래가 가능하므로 ETF 거래 상의 유동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 X 100%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개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유도를 위해 개발된 지수입니다. 전체종목을 KRX 산업분류(KRICS)*를 기준으로 9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KRX 산업분류(KRICS, , 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에너지화학, 소재, 산업재, 모빌리티, 정보기술, 금융 및 부동산, 소비재, 헬스케어, 미디어 및 콘텐츠 등 9개 산업군으로 분류

▪ 선정사유 : 주된 투자대상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 산출 기관 : 한국거래소

▪ 지수 산정 방법 등 :

- 기준일 및 기준 지수 : 2024년 1월 2일, 1,000pt
- 산출방식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 방식
- 정기변경 : 연 1회(매년 6월)
- 구성종목 선정 기준 : 시장대표성, 거래대금 등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구성

※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기초지수의 산출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지수산출업자가 지수를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방법 등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변동률이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액티브 ETF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액티브 ETF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기초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에 편입되어 있거나 비교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 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업가치 관련 질적지표 등을 통해 선별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개념 유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평가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ETF로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ETF가 아닌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패시브ETF보다 상대적으로 추적오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 매매시간동안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장중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iNAV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 : ETF의 시장가격이 ETF 내 기초자산의 가치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NAV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iNAV는 각 증권회사 HTS, MTS 등 ETF 거래 가능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TF 투자에 따른 과세 위험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기간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

	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여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3 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 및 잔여 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 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총 비용	상장지수펀드 역시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 역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일반적인 패시브 상장지수펀드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적극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매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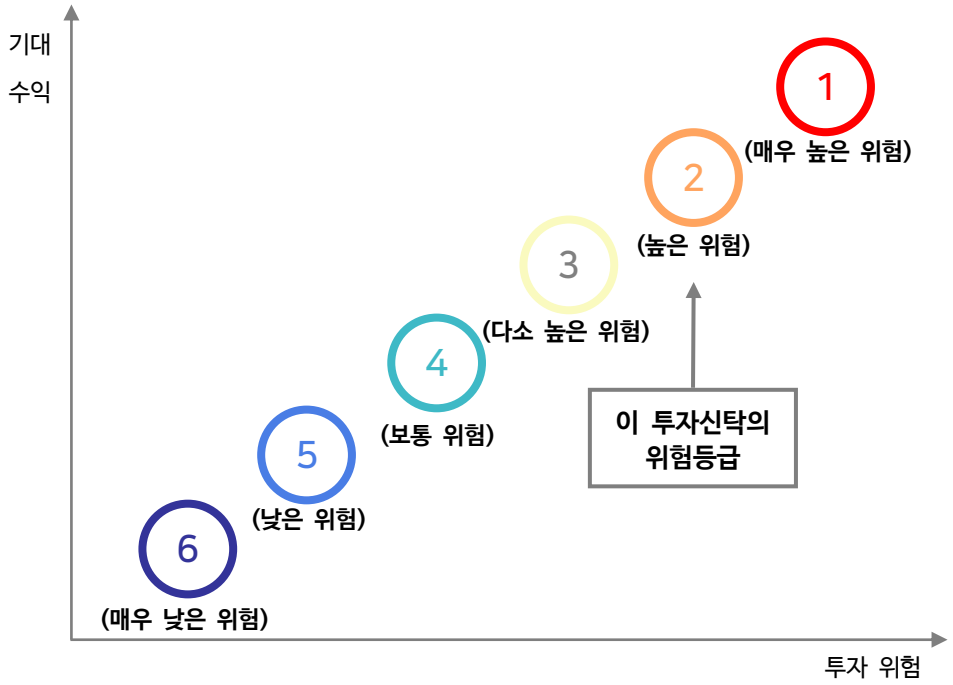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위험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VaR, Value at Risk)의 의미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 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인투자자에 한하며,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증권 및 자금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의한 납부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받으며,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3) 정산금액
이 투자신탁은 그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입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요청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 익일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4) 수익증권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함)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의 당해_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곱하여 산출
-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위의 대납현금의 산출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대납현금의 산출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가 제2항의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으로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법 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함)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 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제1항 내지 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①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 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설정청구일 (T 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 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④ 설정일 (T+2 일)
-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T+2 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	설정청구일 (T)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	설정일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 투자자계좌에 수 익증권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거래소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입 확인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①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 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3 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20,000 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에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수령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2)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 시 30 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

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함)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제7항의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①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 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환매청구일 (T 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 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③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 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④ 환매일 (T+2 일)
-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 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	환매청구일 (T)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	환매일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 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에서 환매자산 인수,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출고 및 환매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거래소 등)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한국거래소에 변경 상 장신청, 투자신탁 일부 해지 (전자등록기관 통한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 산 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4)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②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④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다. 설정 및 환매 시 자산의 이체 방법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규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금전 납입 방식의 수익증권 설정·해지의 경우 한국은행 망을 통한 대금결제를 사용하며 지준일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직접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함)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 = 펀드의 순자산 총액 / 총 좌 수
최초 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초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집합투자증권 총 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 비용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 액티브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0.700	0.050	0.020	0.015	0.785	0.029	0.814	-	0.814	0.029
지급시기	1. 최초보수계산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3개월간 3. 신탁계약해지시 보수계산기간 :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1.01 ~ 2025.12.31]

*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iNAV 산출비용 등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증권거래비용은 3,422,445 원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1.01 ~ 2025.12.31]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발생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1.1 ~ 2025.12.31]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174	267	464	1,0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	174	267	464	1,03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기준일 : 1 월, 4 월, 7 월, 10 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 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 ·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

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함)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③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함)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 조에 의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 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 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 를 2 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 (24.11.01-24.12.31)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제 2 기 (25.01.01-25.12.31)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25.12.31	2024.12.31	
운용자산	9,930,984,454	9,396,073,383	
유가증권	9,545,212,800	9,252,596,500	
현금 및 예치금	385,771,654	143,476,883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35,873,051	77,401,013	
자산총계	9,966,857,505	9,473,474,396	
기타부채	219,498,277	12,889,925	
부채총계	219,498,277	12,889,925	
원본	5,861,904,000	9,769,840,000	
이익조정금	3,885,323,228	-309,460,862	
자본총계	9,747,227,228	9,460,379,138	
손익계산서			
항 목	제2기	제1기	
	(25.01.01-25.12.31)	(24.11.01-24.12.31)	
운용수익	6,709,386,190	-296,011,004	
이자수익	4,067,901	1,748,454	
배당수익	354,254,959	76,799,000	
매매/평가차익(손)	6,709,386,190	-374,558,505	
기타수익	36,677,581	47	

운용비용	128,800,306	13,243,025	
관련회사 보수	92,182,013	12,641,445	
매매수수료	1,181,938	161,007	
기타비용	35,436,355	440,573	
당기순이익	6,580,585,884	-309,254,029	
매매회전율	30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2 기 11,843 원, 1 기 -원)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8,574	3	0.02	9,650	0	0.00
기타(레포,대차,콜 등)	191	0	0.00	-	-	-
합 계	18,765	3	0.02	9,650	0	0.0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58,857	3,421	54,569	3,410	11,523	30	13.02

주 1)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3)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2기	제 1 기	
	2025.12.31	2024.12.31	
운용자산	9,930,984,454	9,396,073,383	
현금및예치금	385,771,654	143,476,883	
현금및현금성자산	385,771,654	143,476,883	
유가증권	9,545,212,800	9,252,596,500	
지분증권	9,545,212,800	9,252,596,500	
기타자산	35,873,051	77,401,013	
미수이자	346,012	601,966	
미수배당금	35,524,200	76,799,000	
기타미수입금	2,839	47	
자 산 총 계	9,966,857,505	9,473,474,396	
기타부채	219,498,277	12,889,925	
미지급운용수수료	11,160,281	11,272,707	
미지급판매수수료	797,136	805,162	
미지급수탁수수료	318,837	322,048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39,117	241,528	
수수료미지급금	173,234	181,467	
기타미지급금	409,672	67,013	
미지급이익분배금	206,400,000	0	
부 채 총 계	219,498,277	12,889,925	
원 본	5,861,904,000	9,769,840,000	
이익잉여금	3,885,323,228	-309,460,862	
자 본 총 계	9,747,227,228	9,460,379,138	
부채 및 자본 총계	9,966,725,505	9,473,269,063	
총좌수	600,000	1,000,000	
기준가격(운용펀드)	16,245.38	9,460.38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5.01.01-25.12.31	24.11.01-24.12.31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6,709,386,190	-296,011,004	
투자수익	358,334,703	78,547,454	
이자수익	4,067,901	1,748,454	
배당금수익	354,254,959	76,799,000	
수수료수익	11,843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390,511,055	149,546,426	
지분증권매매차익	2,994,579,895	1,872,996	
지분증권평가차익	3,395,931,160	147,673,43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6,125,306	524,104,931	
지분증권매매차손	60,838,172	0	
지분증권평가차손	15,287,134	524,104,931	
기타운용수익	36,665,738	47	
운 용 비 용	128,800,306	13,243,025	
운용수수료	82,200,996	11,272,707	
판매수수료	5,871,336	805,162	
수탁수수료	2,348,415	322,048	
사무수탁수수료	1,761,266	241,528	
매매수수료	1,181,938	161,007	
기타운용비용	35,436,355	440,573	
당기순이익	6,580,585,884	-309,254,029	
좌당순이익	6,730,689.48	-309,254.0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4.11.01~24.12.31	1	9,770	1	9,770	-	-	1	9,460
25.01.01~25.12.31	1	9,460	0	2,907	1	8,993	1	9,74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5.01.01 ~25.12.31	-	-	-	설정일 ~25/12/31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ETF	24.11.1	75.44	-	-	-	57.47
비교지수		89.43	-	-	-	67.53
수익률변동성		18.56	-	-	-	18.90

주 1)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해당, 펀드의 운용기간은 1 년 미만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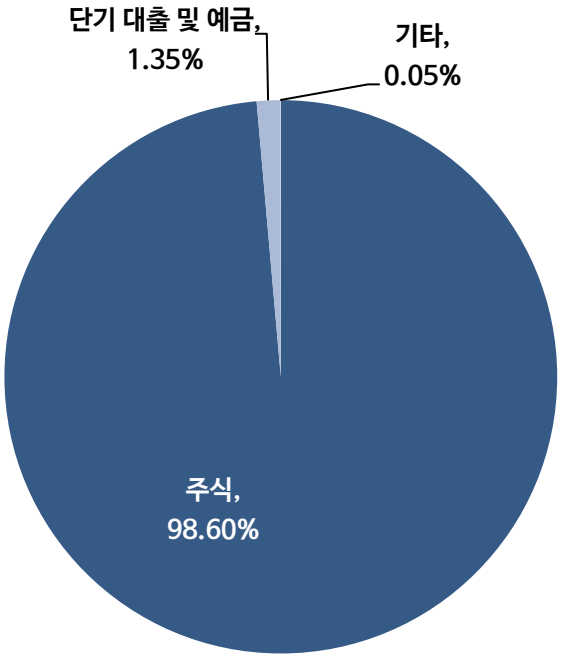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5.01.01 ~25.12.31	-	-	-	-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ETF	75.44	-	-	-	-
비교지수	89.43	-	-	-	-

주 1)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X 100
주 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09.30.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식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규모	13,093	179	7	13,279
비중	98.60	1.35	0.05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성수동 1 가) (☏ 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37.75억원
이해관계인 **(2026.9.30. 기준)**	이해관계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 (62.82%)
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22.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8기 (2025.12.31)	제27기 (2024.12.31)
1. 현금및예치금	24,594	15,050
2. 유가증권	70,420	61,835
3. 대출채권	1,716	1,685
4. 유형자산	16,040	15,604
5. 투자부동산	9,406	9,560
6. 기타자산	16,186	12,681
자산총계	**138,362**	**116,415**
1. 차입부채	5,000	5,000
2. 기타부채	16,757	9,781
부채총계	**21,757**	**14,781**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634	11,40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61	-1,392

4. 이익잉여금	116,549	102,409
5. 기타자본항목	-24,792	-24,566
자본총계	**116,605**	**101,634**
부채 및 자본총계	**138,362**	**116,415**
영업수익	55,488	46,114
영업이익	19,898	16,581
당기순이익	**17,894**	**13,228**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6.9.30.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98,972	7,021	4,969	1,857	381	52,282	265,483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 기타 : 혼합자산,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02-756-0505)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shinhanbank.com
회사연혁	1897.02 한성은행 설립 1943.10 동일은행과 합병 후 조흥은행으로 행명 변경 1982.07 신한은행 창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02-2180-0400)
회사연혁	2000.06.28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 · 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함)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 또는 지점참가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지정참가회사 ·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지정참가회사의 본 · 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
③ 법시행령 제93조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 · 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 7-1 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 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 4 조의 2 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부금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을 말합니다.
설정단위의 평가액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